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2 - 13644호

시행일자 2024. 1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504(2024.1.19.)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약사법」 제23조의2제1항제2호, 제26조제2항제3호 및 「의약품 병용금지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를 신설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알림 → 공지/공고 → 공고)에서 열람 가능

※ 붙임 :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2.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.
3.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협회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회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